



월
간

두 임 누 리 회 보

www.duem.or.kr

제11호 2004년4월22일

발행인 김 상 원
편집인 손 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 단 법 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02/522-4260~1 FAX:02/522-4383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2003년 11월30일자로 개정 시행된 폐기물 관리법에는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제도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자 및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능력이 없이 방치할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하여 그 대책 마련으로 시행되었다. 올 5월 29일 부터 본격 실시될 이 제도는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처리 분담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다. 그 방법은 해당부서에 직접 분담금을 예치하는 것과 은행보증을 받는 방법, 보증 보험의 보증을 받는 방법, 공제조합과 공제조약을 맺는 방법이다. 이중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다른 보증 방법과 다른 점이 매년 보증서를 갱신 할 필요가 없고 은행이나 보증 보험사처럼 담보 및 연대 보증인이 필요 없으며 더 유리한 점은 협회를 통하여 단체가입이 가능하며 단체 가입함으로써 분담금의 액수가 배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업무는 협회를 통하여 일괄 처리 함으로서 가입이후 이 업무에 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회원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업체의 단체가입 안내 공문

을 발송한바 10여개 업체가 단체가입을 신청하였다. 이 업체에는 가입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양식 및 준비서류에 관해 안내서를 별도 발송하였다. 이 서류를 받은 회원사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 양식대로 적법하게 기재하여 본 협회로 보내주기 바란다. 단체가입에 경우 개별적 가입에 비해 많은 비용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이나 공제조합측과 단체가입 협상 과정에서 가입회원사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되도록이면 폐기물 중간 처리업 이나 재활용 사업을 등록한 업체들은 이 기회에 모두가 참여 하면 좋겠다.

생산 능력 실태조사서

비료공정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질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일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부산물 비료분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부분만 정비되어있지 시설에 관한 관리 및 기준이 미비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품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등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되어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이에 앞서 생산시설을 점점 그 실태조사를 하고자 조

사서를 발송한바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서의 회신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업체별 생산 능력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올해부터는 농협납품 지정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인을 추천기관인 협회장이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기존에 지정을 받은 업체들도 생산능력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정기총회에 일제 조사를 하자고 결정된바있다. 모든 제도가 필요성이 있어 실시 할 때에는 그 제도에 역매여 끌려가기 보다는 스스로 참여하여 좀더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주위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될 것이다.

향후 퇴비의 변신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와 친환경농업 정책의 바람을 타고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퇴비의 변신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발 맞춰 1급 그린퇴비의 신설로 품질의 차등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퇴비의 변신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외형상의 변화로 사용하기 편리한 상태로 입상화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퇴비의 기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외형상의 변화로는 주로 펠렛화를 많이 시도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업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어 판매신장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이 입상화(주로 펠렛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 퇴비가 이쪽으로 발

전해 나가려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공정을 보면 퇴비는 유기질비료와는 달리 유기물을 발효시켜 만들어 짐으로 일정량의 수분이 남아 있게 되고 입자 또한 수분 조절제의 첨가로 일정크기 이상이므로 그대로는 입상화 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입상화 시키기 좋은 상태로 분쇄를 시켜야한다. 그런데 퇴비는 50%전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그대로는 분쇄하기 어렵다. 이것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분이하로 건조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분쇄된 퇴비는 다시 펠렛 기계를 통과 시키면서 형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수분 및 적당한 접착능력이 있는 물질을 다시 첨가하여야한다. 이렇게 하여 일정모양이 만들어 지면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다시 급속건조라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때 냉각건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높은 열에 의해 건조시키는 방식이라면 발효를 거쳐 얻어진 퇴비의 미생물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러한 공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설비의 종류만 보아도 대형파쇄기와 혼합기, 건조기, 펠렛기등 만만치 않은 투자가 요구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도 입상화된 제품이 적당한 시기에 잘 분해 되도록 만들어지는 기술이 필요한데 내가 본 어떠한 제품은 10일 이상 물속에 있어도 풀어지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료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는 퇴비의 외형상 변신에 큰 걸림돌이며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다른 한가지의 변화는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퇴비의 특성 중 하나로 발효를 통한 미생물의 활성화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생물학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발효가 충분히 진행된, 악성 병원성 세균류가 완전히 사멸된 제품에 선충등 연관장해의 요인인 병원균을 억제시키는 길항균을 집중 배양시켜 병해 방제 역할을 강화시킨 기능성 퇴비의 개발일 것이다. 이미 본 협회에서는 황성유기농산의 김상원 회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능성 퇴비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그 결과 무사마귀병을 구제하는 기능성퇴비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여 시험 재배한 결과 그 성능을 인정받아 주위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참고로 이 병은 경기 강원의 고랭지 재배 배추 및 무에 급속히 번져서 이 지역 배추 생산의 가장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였으며 지금은 고랭지뿐만 아니라 평지 까지도 발생하여 충남 당진, 아산, 전남 해남 등 배추를 재배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발생하는 일반적인 병해가 되었다. 최근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무사마귀 방제약제를 무려 4억6천여만원이나 보조 지원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기능성 퇴비의 출현은 이렇게 골치 아픈 병해는 물론 퇴비한가지만 사용해도 지력을 증진시킴은 물론 무공해 유기농산물 생산은 물론 그 생산량증수에도 절대적 역할을 해 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사마귀병에 걸린 배추

악취에 관한 문제라면 몰라도 소독요령이라니? 의아해 하실 회원사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가축전염 예방법에 따라 제정고시된 그 하위법이다. 이법 제5조1항에 관련 소독설비 대상별 소독실시 기준을 보면 그 대상에 「축분 비료공장」이 있고 설치기준에는 공통기준으로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갖추게 되어있고 개별기준에는 「가축분뇨, 축분비료 수송차량 세척, 소독시설 혹은 고압 분무기(2대이상), 출입자 소독조」를 갖추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독 점검사항에는 점검대상에 「축분 비료공장」이라 되어있고 점검범위는 「비료관리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가축분뇨를 주 원료로 하는 부산물 비료 생산시설」로 되어있고 점검주체는 「시장, 군수」 점검요령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전 비료공장 점검」으로 되어있다. 이 법에 따라 일부 시, 군에서는 대상업체에 대하여 시설 설비 등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 방역을 위한 그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참으로 궁금하다. 퇴비공장은 가축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자면 가축분뇨 자체가 쓰여지는 곳도 아니다. 물론 축산농장에 처리시설이 함께 있는 곳은 예외이다. 이는 농장과 함께 있고 농장에 부속 시설이니 농장 소독에 관련되어 이중으로 소독시설을 갖추 필요도 없다. 그 외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한 처리시설을 거친 처리 부산물을 가공하는 곳이다. 그 부산물이 방역에 문제가 된다면 거슬러 올라가 처리시

설이 문제이고 또한 처리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법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한 가지는 처리방식은 이미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으므로 처리 부산물에도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문제가 있다면 비료관리법에 소규모 축산 농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발효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퇴비를 유통시키는 축산농가에 문제가 있다. 둘째로는 이법 제 1장 총칙 제2조(정의)1항에 「소독이라 함은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약물, 훈증, 증기, 물끓임, 발효, 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헌데 2항 소독설비에는 발효에 관한 설비가 빠져있다. 그리고는 발효소독 방법 외에 소독방법에 관한 설비만을 설치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다시 말 하지만 부산물 비료공장은 축분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축분 그 자체는 아니고 적법한 처리 시설을 거친 부산물을 원자재로 하고 있고 설사 축분 자체를 사용하여 처리를 겸하고 있다 해도 가축전염 예방법에서 정의한 소독시설인 발효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중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하는 모순이 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은 처리시설과 비료 생산시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부산물비료 전체가 축산 폐수나 처리하는 종속분야로 보아져서는 업계의 발전에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분처리차원에서 퇴비가 곧 축분이라는 인식은 없어져야한다. 그리고 퇴비분야가 발전되면 축분처리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본다. 축분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축분퇴비를 일반 부산물비료의 퇴비와 차별을 두어 생생내기식 지원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축분처리의 근본적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것이다.

미납회비 및 찬조금 협조요청

협회는 총회의 결정사항으로 협회비를 년초에 년회비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년초 농협중앙회 납품 계약업무와 겹쳐 배상물 책임보험과 같이 납부 하게 되어 일부 회원사께서 회비와 기타 찬조금에 대하여 분납을 희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단체표준업무에 관해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납된 회원사께서는 속히 미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회원 안내

태강마이티쏘일 대표 임재원 충남 천안

이 업체는 생석회처리로 안정화시키는 방법의 생산시설로 계분을 주로사용하고 있음.

통일비료 대표 차선용 경기 안성

이 업체는 돈분을 주로 사용하고있으며 음식물 찌꺼기 처리부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생산시설은 에스커레이터식 발효시설을 갖추었음.

(주)포포텍 대표 박 두극 경북 상주

이 업체는 인근 양돈장의 축산폐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생물 제재도 함께 생산하고 있음 발효시설은 통풍식시설임
토비 대표 김 종만 전남 화순

이 업체는 공장 입지여건상 축분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두부비지와 버섯배지 톱밥을 주로사용하고 있고 발효시설은 밀폐형 급속발효시설과 에스커레이터식이 있다.